#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4

발의연월일: 2020. 9. 3.

발 의 자:전용기・홍영표・한준호

설 훈・양향자・홍기원

이상직 · 이병훈 · 권칠승

송영길 · 김병주 · 송갑석

김진표 · 도종환 의원

(14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비대면 시장의 확대 속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연 5.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고 있음.

현행법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반해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법률 제 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체육"을 "체육·대중문화예술"로 한다.

- 4.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 여 추천한 사람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 의 연기) ① (생 략) 의 연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 | 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민 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 <신 설> 4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 이 연기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 를 취소할 수 있다.

4	(생	략)
<u> </u>	\ U	1/

⑤ 제2항에 따른 학교·연수기 관 및 <u>체육</u> 분야 우수자의 범위 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u>체육·대중문화예술</u>